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14
----------	-----

2020. 4. 29.(수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서동학 의원 등 6인

나. 발의일자: 2020년 4월 13일

다. 회부일자: 2020년 4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2020년 4월 23일

(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서동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
(현행)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
(변경)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
- ‘각급학교’ 를 ‘학교’ 로 변경함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)
-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최경분)

가. 주요내용 검토

-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「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
-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내에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유지·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종합 검토의견

- 최근 학교 내 교통사고가 잦아지고 있지만, 현행 도로교통법(제12조제3항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)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(제3조 처벌 특례) 상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는 학교 내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 개정 등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,

- 2019. 7. 2.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고,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 (guardrail) 등을 설치하도록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임.
-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교 내 보·차도 설치 및 유지·관리 체계 마련과 그 시행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구성과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어,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각급학교””를 ““학교”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각급학교”를 각각 “학교”로 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보행환경”을 “보행”으로, “예방 및 교육”을 “예방교육”으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·관리)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보행자 안전시설의 안전성 및 내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5조)제1항 중 “각급학교”를 “학교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교육청</u> <u>각급학교</u> 내 <u>교통안전에 관한 조례</u></p>	<p><u>충청북도교육청</u> <u>학교</u> 내 <u>교통안전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각급학교</u>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<u>각급학교</u> 내 학생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·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<u>각급학교</u>의 장과 교원, 학부모는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학교</u>” ----- ----- ----- 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----- ----- - <u>학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학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제4조(교내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) 학교장이 학교 내 교통안전 지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5. 그 밖의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<신설>

제5조(교내 교통안전 실태조사)

- ① 교육감은 매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3조제1항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(생략)

제6조·제7조 (생략)

제4조(교내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)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보행
----- 예방교육-----

제5조(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

유지·관리)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턱이나 보호난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보행자 안전시설의 안전성 및 내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내 교통안전 실태조사)

- ① ----- 학교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·제8조 (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)

관계 법령

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9. 6. 19.] [법률 제15966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제7조(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) ①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②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·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,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학교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9. 7. 2.] [대통령령 제29950호, 2019. 7. 2., 타법개정]

제10조(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) ①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1. 14.>

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1]<개정 2019. 7. 2>

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(제10조제1항 관련)

분야	안전기준
건축물	1. 건축물 주변: 학생들의 등·하교 길에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. 가.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한다. 나.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(guardrail) 등을 설치한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19. 12. 3.] [법률 제16672호, 2019. 12. 3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[전문개정 2012. 3. 21]

□ 유아교육법

[시행 2020. 3. 1.] [법률 제16875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3. 24., 2012. 3. 21.>

1. “유아“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치원“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3. “보호자“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.
4. 삭제 <2012. 3. 21.>
5. 삭제 <2012. 3. 21.>
6. “방과후 과정“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(경계 턱, 가드레일 등) 및 교내 보·차도 분리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

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
- 안 제5조(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·관리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2020년 비용 소요 예상액

나. 추계결과: 2020년부터 향후 2년간(2020~2022년) 6,900,711천원

※ 2020년(1차년도): 2,669,511천원

2021년(2차년도): 2,342,803천원

2022년(3차년도): 1,888,397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: 자체재원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: 붙임

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계	
세 입	0	0	0	0	
세 출	2,669,511	2,342,803	1,888,397	6,900,711	
학교 내 보·차도 분리공사	2,669,511	2,342,803	1,888,397	6,900,711	
재원 조달	2,669,511	2,342,803	1,888,397	6,900,711	
의존 재원	소 계	2,669,511	2,342,803	1,888,397	6,900,711
	국고보조금				0
	보통교부금	2,669,511	2,342,803	1,888,397	6,900,711
	특별교부금	(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계획에 의함)			0
	기초자치단체 전입금				0
자체 수입	소 계				0
	자체수입				0
					0
					0
지방채				0	
기 금				0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0	